

제 호

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 :
2. 대 표 자 :
3. 소 재 지 :
4. 지정분야 : ○ ○ 분야
5. 시설·장비 내역

시설내역	
장비내역	

위 기관을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직인

(뒤쪽)

<변경사항>

[illegible]

<처분사항>

[illegible]